

화성상공회의소 인문학습원 운영 규정

2021. 06. 17. 제정

제1조(명칭) 본 과정의 명칭은 화성상공회의소 인문학습원(이하 “인문학습원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규정은 화성상공회의소(이하 “화성상의”라 한다)의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업성장을 위한 인문적 소양 향상을 위하여 인문학습원을 두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설치) 인문학습원의 교육행정, 학습지원, 행사운영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화성상공회의소 내에 설치하며 교육사업팀이 주관 한다.

제4조(사업) 인문학습원은 화성상의 회원사 CEO 및 임원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.

- ① 인문학 강의 및 포럼 개최 등 기업 성장을 위한 정보의 제공
- ② 경영전략 수립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강연 및 강연 개발
- ③ 인문학습원 운영 관련 부대행사

제5조(임원) 인문학습원 임원은 다음으로 구성한다.

- ① 인문학습원에서는 원장 및 부원장을 둔다.
- ② 화성상의 회장은 인문학습원 원장을 겸직하며, 부원장은 교육사회공헌 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.
- ③ 원장은 인문학습원을 대표하며, 부원장은 운영을 총괄하고 원장을 보좌한다.
- ④ 임원의 임기는 화성상공회의소 집행부의 임기와 같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① 운영위원은 각각 원장, 부원장, 교육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, 교육사회공헌위원회 부위원장, 교육사회공헌위원회 총무, 인문학습원 총원우회장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의 해당사업부서의 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출석,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서면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화성상공회의소 집행부의 임기와 같다.

제7조(운영위원회 역할) 인문학습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인문학습원 운영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발의 기준 제시

② 인문학습원 기수별 강연에 따른 강사 및 강사료 제안

제8조(운영기준) 인문학습원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화성지역 유관기관장, 공직자, 기업 CEO 및 임원을 교육 대상으로 한다.
- ② 대상자에게 인문학 강의(도서제공), 워크샵(1박2일 이상), 인문학습원 총원우회 가입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.
- ③ 대상자 선발은 다음을 기준으로 선발한다.
 1. 화성상공회의소 회원사 우선 선발
 2. 제조업 > 건설업 >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화성 관내 분포 비율이 높은 업종 우선 선발
 3. 기업 CEO > 유관 기관장 > 공직자 > 기업 임원 순 우선선발
 4. 세무사, 노무사, 법무사, 회계사, 변리사 등 기수별 전문직 종사자 각 1명 이내에서 선발
 5. 기 수료자 제외
 6.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(예시: 보험업, 요식업 등) 제외
- ④ 참가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
제9조(총원우회 예산지원) 화성상의는 인문학습원 및 인문학습원 총원우회의 발전, 교류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기타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성상의의 제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.